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1년 6월 29일

국무총리 김부겸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한정애

●대통령령 제31850호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1호 중 “제10호까지”를 “제9호까지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)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“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상근(常勤)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것.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2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춘 것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·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849호, 2021. 1. 5. 공포, 7. 6. 시행)됨에 따라, 기상청장이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·단체 및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 인력·시설의 요건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